

## 議案檢討報告書

1. 發議 또는 提出者 : 金容濬 議員 外 4人
2. 件名 : 地方自治法中 改正建議案
3. 案件要旨 : 別添 參照
4. 檢討意見 : 別添 參照

위 議案에 대한 檢討事項을 別添과 같이 報告합니다.

1993年 2月 日

運營委員會

專門委員 金 鎮



地方自治法中 改正建議案  
檢 討 報 告 書

1993. 2.

運 營 委 員 會  
專 門 委 員

## 地方自治法中 改正建議案 檢 討 報 告

이 地方自治法 改正建議案은 1993. 2. 16 金容濬 議員 外 4人으로부터 提出되어 1993. 2. 16 當 委員會에 回附 되었음.

### 1. 提案理由

地方自治 實施의 根本趣旨에 따라 地方議會運營의 效率性和 地方議會 議員의 圓滑한 議政活動을 提高하고, 地方自治制度의 早期 定着과 發展을 圖謀하기 위하여 改正案을 提案함.

### 2. 主要骨子

가. 地方議會議員이 職務로 인하여 傷害를 입거나 死亡한 때에는 補償金を 支給할 수 있도록 함. (案 第32條의 2)

나. 地方議會가 監査할 수 있는 事務의 範圍에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委任된 事務와 地方自治團體가 經費를 負擔하는 事務를 包含하도록 하고,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委任된 國家事務와 上級 地方自治團體의 事務(市·道事務)에 대하여 國會 및 市·道議會는

그 監査를 각각 當該 市·道議會와 市·郡 및 自治區議會에서 하도록 함. (案 第36條)

- 다. 地方議會에서의 證言·鑑定등에 關한 節次는 當該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하도록 함. (案 第36條의 2)
- 라.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關係公務員이 地方議會나 그 委員會의 要求가 있을 때에 出席·答辯하는 境遇,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議長 또는 委員長의 承認을 얻어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出席·答辯할 수 있도록 함. (案 第37條)
- 마. 地方自治團體에 두는 地方公務員의 定員은 當該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하도록 함. (案 第103條)
- 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豫算案을 編成하여 市·道는 會計年度 開始 50日 前까지 市·郡 및 自治區는 會計年度 開始 40日 前까지 地方議會에 提出 하도록 함. (案 第118條)
- 사. 內務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の 地方自治團體의 自治事務에 關한 監査規定을 削除함. (案 第158條 削除)
- 아. 地方議會에서 再議決된 事項에 대하여 大法院에 訴를 提起한 境遇 大法院의 判決이 있을 때까지 效力이 停止되지 아니 하도록 함. (案 第159條)

### 3. 檢討意見

本 法律改正 建議案은 地方自治實施의 根本趣旨에 따라 地方議會 運營의 效率성과 地方議會議員의 圓滑한 議政活動을 提高

하고 地方自治制度의 早期 定着과 發展을 圖謀하기 위하여 地方自治法中 改正建議案을 國會, 內務部등 中央의 關係機關에 建議하려는 事項임.

主要內容을 말씀드리면

- 第32條의 2 (傷害·死亡등의 補償)를 新設하여 地方議會議員이 職務로 인하여 身體에 傷害를 입거나 死亡한 때에는 補償金を

支給할 수 있도록 하고 補償金 支給基準은 全國적으로 統一을 기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範圍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

의 條例로 정하도록 하였음은 이는 地方議會議員이 名譽職이라 하더라도 職務上 議政活動으로 인하여 身體에 傷害를 입거나

死亡時에는 補償金を 支給함은 妥當함으로 全國적으로 統一된 一定한 基準이 中央政府次元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思料되며

- 第36條(行政監査 및 調査權)의 地方議會가 監査할 수 있는 範圍에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委任된 國家事務와 地方自治團體가 經費를 負擔하는 事務를 包含하도록 하고(3項 新設)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委任된 國家事務와 上級 地方自治團體 事務에 대하여 國會 및 市·道議會는 그 監査를 각각 당해 市 道議會와 基礎議會에서 할 수 있도록 規定하므로써 (4項 新設)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會의 國政監査權과 基礎團體에 대한 廣域議會의 監査權限을 制限하고, 地方自治團體에 對한 監査는 당해

地方議會로 하여금 實施하도록 한 것은 地方自治를 健全하게 成長 發展시키기 위하여 꼭 必要한 措置라 判斷되며

- 第36條의 2(地方議會에서의 證言·鑑定등)를 新設하여 地方議會에서의 證言·鑑定등에 관한 節次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하도록 한 것은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活動등에 있어서 證人出席, 資料要求등에 不應하거나 證言·鑑定時 위증할 경우 이에 대한 處罰規定을 마련하여 議政活動의 实效性을 確保하려는 次元에서 妥當한 措置라 思料되며
- 第37條(行政事務處理 狀況의 報告와 質問 應答)의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關係公務員은 地方議會나 그 委員會에서 出席 要求 하였을 경우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出席 答辯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地方自治團體의 長이라 하더라도 事前에 議長 또는 委員長의 承認을 얻어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答辯이 可能하도록 改正하려는 것이다.
- 第103條(地方自治團體의 公務員)의 地方公務員의 定員은 內務部令이 定한 基準에 따라 地方自治團體의 規則으로 定하도록 되어 있는 現行法을 地方行政의 環境變化에 能動的으로 對處하고 地域 實情에 맞도록 地方公務員의 定員을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하도록 改正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第118條의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豫算案을 編成 市·道는 會計年度 開始 40日前까지 基礎團體는 35日前까지 地方議會에 提出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市·道는 50日前 基礎團體에서는 40日前까지 地方議會에 提出하도록 改正하려는 것인바 이는 定期會時 行政事務監査, 市政質問, 決算審議 등과 겹쳐 深度있는 豫算審議에 日程이 促迫하므로 豫算案 提出時期를 앞당기는 것은 適切한 措置라 思料됩니다.
- 第158條(地方自治團體의 自治事務에 對한 監査)의 地方自治團體의 自治事務에 對한 內務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の 監査規定을 削除하므로 地方議會的 行政事務監査와 重複된 監査로 인한 行政浪費를 피하도록 하였으며
- 第159條(地方議會 議決의 再議와 提訴)의 地方議會에서 再議決한 事項이 法令에 違反된다고 判斷 市·道知事が 大法院에 訴를 提起한 경우 大法院 判決이 있을때까지 議決의 效力이 停止된다는 內容을 效力이 停止되지 않도록 改正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의 地方自治法中 改正 내지 新設 對象으로 採擇한 事項들은 地方自治制度의 根本趣旨에 따른 效率的인 議會運營과 議員의 議政活動에 制約을 주는 不合理한 事項으로써 地方自治 및 地方議會的 早期定着과 發展을 爲하여 改正되어야 할 것인바, 關係要路에 早速히 改正토록 建議 促求함은 妥當한 것으로 思料됩니다.